

신북방

아랍에미리트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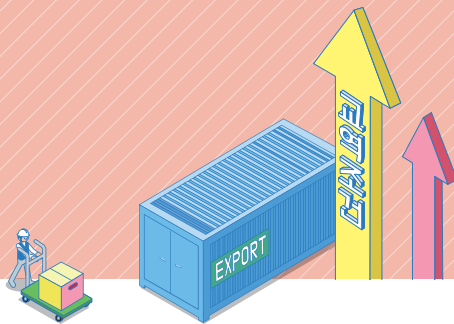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621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637
03. 비관세장벽 현황	640
04. 수출 애로사항	647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649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아랍에미리트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용어 정의]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2년 아랍에미리트 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32억 달러(한화 약 43조 4,920억 원)로 집계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166억 달러(한화 약 21조 7,460억 원)로 전체의 50.0%에 해당함
 - * 육류 시장이 1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채소류(11.4%), 낙농품(10.8%), 과일 및 견과류(9.3%)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166억 달러(한화 약 21조 7,460억 원)로 전체 50.0%를 차지함
 - * 스낵류 시장은 전체의 26.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되었으며,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13.9%), 편의식품(5.1%), 소스 및 향신료(2.1%) 순임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9.6	29.8	30.4	31.4	33.2	100.0	5.7
신선식품	14.5	14.7	15.0	15.7	16.6	50.0	5.7
- 육류	4.4	4.4	4.5	4.7	4.9	14.8	4.3
- 채소류	3.3	3.3	3.4	3.5	3.8	11.4	8.6
- 낙농품	3.1	3.1	3.2	3.4	3.6	10.8	5.9
- 과일 및 견과류	2.7	2.8	2.8	2.9	3.1	9.3	6.9
- 유제품	1.0	1.1	1.1	1.2	1.2	3.6	0.0
가공식품	15.1	15.1	15.4	15.7	16.6	50.0	5.7
- 스낵류	7.9	7.9	8.1	8.3	8.8	26.5	6.0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3	4.3	4.3	4.4	4.6	13.9	4.5
- 편의식품	1.5	1.5	1.6	1.6	1.7	5.1	6.2
- 소스 및 향신료	0.6	0.6	0.6	0.6	0.7	2.1	16.7
- 스프레드 및 당류	0.6	0.6	0.6	0.6	0.6	1.8	0.0
- 영유아용 식품	0.1	0.1	0.1	0.1	0.1	0.3	0.0
- 펫푸드	0.1	0.1	0.1	0.1	0.1	0.3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944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임
 - 연령대별 인구 비중의 경우, 0~14세(10.0%), 15~24세(9.2%)의 인구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으며, 25~34세(27.8%), 35~44세(27.9%), 45~54세(13.4%), 55세 이상(11.8%)으로 특히 25~44세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여성 인구 수는 약 289만 명(약 30.6%), 남성 인구 수는 약 655만 명(69.4%)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의 약 2배 이상임
- 2021년 가구 수는 총 93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1.4%가 증가한 평균 2만 1,270달러(한화 약 2,786만원) 규모임
 - 2021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전체의 32.2%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1.3% 증가함
-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3,294.7달러(한화 약 431만원)로 전년 대비 4.9% 증가함
 - 신선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646.4달러(한화 약 215만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50.0%를 차지함
 - * 육류 소비액이 486.9달러(한화 약 63만 7,839원)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뒤이어 채소류 374.3달러(한화 약 49만원), 낙농품 358.7달러(한화 약 46만원), 과일 및 견과류 305.0달러(한화 약 39만원) 순임
 - 가공식품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648.3달러(한화 약 216만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50.0%를 차지함
 - * 스낵류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873.1달러(한화 약 114만원)로 최고 수준이며,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57.9달러(한화 약 60만원), 편의식품 169.7달러(한화 약 22만원), 소스 및 향신료 67.7달러(한화 약 8만원) 순임

1인당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3,080.3	3,036.1	3,073.9	3,140.0	3,294.7	100.0	4.9
신선식품	1,516.7	1,500.2	1,523.4	1,565.4	1,646.4	50.0	5.2
- 육류	458.1	450.7	455.2	465.1	486.9	14.8	4.7
- 채소류	345.7	341.1	345.5	354.2	374.3	11.4	5.7
- 낙농품	321.6	320.0	326.7	337.8	358.7	10.9	6.2
- 과일 및 견과류	284.8	281.2	285.2	292.5	305.0	9.3	4.3
- 유지류	106.5	107.2	110.8	115.8	121.5	3.7	4.9
가공식품	1,563.6	1,535.9	1,550.5	1,574.6	1,648.3	50.0	4.7
- 스낵류	817.3	805.4	816.2	828.6	873.1	26.5	5.4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445.2	435.2	436.7	443.4	457.9	13.9	3.3
- 편의식품	159.9	157.2	158.6	162.0	169.7	5.2	4.8
- 소스 및 향신료	62.6	61.7	62.5	64.0	67.7	2.1	5.8
- 스프레드 및 당류	61.4	58.3	56.9	56.1	57.6	1.7	2.7
- 펫푸드	7.6	8.5	10.0	10.4	11.7	0.4	12.5
- 영유아용 식품	9.6	9.6	9.6	10.1	10.6	0.3	5.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채소류, 낙농품, 육류 등 신선식품의 소비량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

*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이 230.8kg으로 가장 많으며, 전년 대비 2.0% 증가함

* 다음으로 낙농품(105.1kg), 과일 및 견과류(92.3kg), 육류(57.6kg), 유지류(22.3kg) 순으로 집계됨

- 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소비량을 보임

* 가공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로, 1인당 소비량이 129.2kg으로 가장 많음

* 뒤이어 스낵류(90.8kg), 편의식품(27.0kg) 순으로 집계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8~2022)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채소류	218.6	219.5	226.9	226.2	230.8	2.0
	- 낙농품	98.9	99.4	102.8	102.7	105.1	2.3
	- 과일 및 견과류	94.2	92.2	93.5	91.8	92.3	0.5
	- 육류	53.2	54.6	56.7	56.9	57.6	1.2
	- 유지류	20.8	21.0	22.0	22.2	22.3	0.5
가공식품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30.0	129.4	131.9	129.6	129.2	-0.3
	- 스낵류	90.3	89.8	91.4	89.8	90.8	1.1
	- 편의식품	26.4	26.4	27.0	26.7	27.0	1.1
	- 스프레드 및 당류	17.1	16.3	16.0	15.2	15.1	-0.7
	- 소스 및 향신료	11.1	11.2	11.6	11.6	11.8	1.7
	- 펫푸드	3.1	3.4	4.0	4.0	4.4	10.0
	- 영유아용 식품	0.5	0.5	0.4	0.5	0.5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농식품 수출액은 182억 9,862만 달러(한화 약 23조 9,712억 원)로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10.2%의 지속적인 성장세임
 - 주요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11.0%), 이라크(9.5%), 오만(8.1%) 순임
 - *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20억 1,477만 6,000달러(한화 약 2조 6,394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5개년 연평균 성장률 7.7%를 기록함
 - * 뢰이라크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0% 증가한 17억 3,357만 6,000달러(한화 약 2조 2,710억 원)로 집계됨
 - * 뢰오만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8.6% 증가한 14억 9,033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9,523억 원)로 집계됨
 -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3,199만 3,000달러(한화 약 419억 원)로 전체 수출의 0.2%를 차지하며, 연평균 39.3%의 높은 성장세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2,414,187	13,408,481	13,466,267	15,243,376	18,298,620	100.0	20.0	10.2
1 사우디아라비아	1,495,501	1,548,245	1,734,210	1,671,219	2,014,776	11.0	20.6	7.7
2 이라크	1,895,416	1,681,954	1,284,527	1,274,511	1,733,576	9.5	36.0	-2.2
3 오만	1,154,623	1,269,930	1,029,455	1,158,698	1,490,337	8.1	28.6	6.6
4 이란	1,511,678	1,650,752	729,535	1,008,520	1,416,402	7.7	40.4	-1.6
5 소말리아	447,904	616,125	755,328	730,522	929,543	5.1	27.2	20.0
6 쿠웨이트	549,328	590,158	704,392	727,301	790,622	4.3	8.7	9.5
7 중국	89,543	307,978	575,941	881,381	652,117	3.6	-26.0	64.3
8 예멘	283,407	423,735	445,256	498,876	594,098	3.2	19.1	20.3
9 리비아	290,643	364,641	559,656	572,484	503,818	2.8	-12.0	14.7
10 아프가니스탄	458,622	428,451	575,069	380,723	450,157	2.5	18.2	-0.5
65 한국	8,492	38,259	23,276	35,986	31,993	0.2	-11.1	39.3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2022년 주요 수출 품목은 우유(3.6%), 유채유(2.7%), 사탕수수 기타(2.2%) 등이 있음

* 우유 수출액은 6억 6,389만 달러(한화 약 8,697억 원)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함

* 유채유의 수출액은 4억 9,390만 6,000달러(한화 약 6,470억 원)로 전년 대비 36.8% 증가함

* 사탕수수 기타 품목의 수출액은 4억 1,073만 8,000달러(한화 약 5,381억 원)로 전년 대비 41.1% 감소함

* 그 외 렌즈콩(2.1%), 조제식료품(1.7%) 등이 있음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2,414,187	13,408,481	13,466,267	15,243,376	18,298,620	100.0	20.0	10.2
1 우유	578,581	549,705	534,966	567,827	663,890	3.6	16.9	3.5
2 유채유	5,311	165,276	287,017	361,013	493,906	2.7	36.8	210.5
3 사탕수수 기타	338,555	138,396	576,990	697,151	410,738	2.2	-41.1	5.0
4 렌즈콩	107,037	123,668	184,079	239,590	389,750	2.1	62.7	38.1
5 조제식료품	300,964	246,519	286,412	257,751	313,066	1.7	21.5	1.0
6 발효차	182,783	173,856	236,110	241,935	295,202	1.6	22.0	12.7
7 대추야자	197,553	218,566	228,768	272,015	285,506	1.6	5.0	9.6
8 아몬드 (탈각)	177,685	234,542	200,282	226,386	273,678	1.5	20.9	11.4
9 정유 기타	80,055	117,153	163,896	215,346	249,650	1.4	15.9	32.9
10 팜유 기타	92,311	45,989	70,732	162,100	222,686	1.2	37.4	24.6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 2022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232억 218만 1,000달러(한화 약 30조 3,949억 원)로 집계됨
 - 주요 수입국은 인도(10.3%), 브라질(9.0%), 호주(7.2%), 미국(6.4%), 사우디아라비아(4.5%) 등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이 이루어짐
 - * 인도산 수입액은 23억 9,708만 2,000달러(한화 약 3조 1,402억 원)로 전년 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 브라질산 농식품 수입액은 20억 9,956만 달러(한화 약 2조 7,504억 원)로 전년 대비 45.5% 증가함
 - 한국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4억 1,960만 1,000달러(한화 약 5,497억 원)로 전년 대비 16.8%가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액 중 1.8%를 차지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 '22)	연평균 ('18~' '22)
전체	17,582,365	17,653,088	16,661,232	18,292,472	23,202,181	100.0	26.8	7.2
1 인도	1,826,308	1,544,506	1,544,298	1,957,248	2,397,082	10.3	22.5	7.0
2 브라질	1,454,799	1,623,859	1,255,787	1,443,216	2,099,560	9.0	45.5	9.6
3 호주	788,078	606,346	541,431	882,425	1,661,033	7.2	88.2	20.5
4 미국	1,281,976	1,594,097	1,286,542	1,287,097	1,481,200	6.4	15.1	3.7
5 사우디아라비아	827,310	852,570	786,898	845,509	1,034,809	4.5	22.4	5.8
6 중국	507,204	528,114	467,123	531,353	793,629	3.4	49.4	11.8
7 프랑스	557,789	530,451	397,589	539,883	771,086	3.3	42.8	8.4
8 영국	534,916	499,187	449,536	491,100	659,003	2.8	34.2	5.4
9 캐나다	506,678	531,486	798,142	815,473	628,078	2.7	-23.0	5.5
10 뉴질랜드	600,922	501,199	507,599	504,560	588,278	2.5	16.6	-0.5
17 한국	326,484	242,606	475,391	359,360	419,601	1.8	16.8	6.5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수입 상위 품목은 유채씨(저에루크산)(3.8%), 조제식료품(3.2%), 무첨가 우유·크림(3.1%) 등임

* 유채씨(저에루크산)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억 9,092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1,671억 원)로 5개년 연평균 성장률 25.3%를 기록함

* 조제식료품 수입액은 7억 5,167만 7,000달러(한화 약 9,847억 원)로 전년 대비 26.0% 증가함

* 미절단 냉동 닭고기가 전년 대비 83.4%의 큰 성장률을 보이며, 6억 3,961만 4,000달러(한화 약 8,379억 원)의 수입규모를 형성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7,582,365	17,653,088	16,661,232	18,292,472	23,202,181	100.0	26.8	7.2
1 유채씨 (저에루크산)	361,988	317,169	499,923	711,628	890,928	3.8	25.2	25.3
2 조제식품	504,878	481,529	552,435	596,537	751,677	3.2	26.0	10.5
3 무첨가 우유· 크림	519,173	448,692	563,396	554,912	720,037	3.1	29.8	8.5
4 미절단 냉동 닭고기	316,219	328,245	309,918	348,823	639,614	2.8	83.4	19.3
5 절단 냉동 닭고기	396,792	448,681	306,601	385,635	583,412	2.5	51.3	10.1
6 밀 기타	330,283	333,440	374,306	415,415	545,601	2.4	31.3	13.4
7 쌀(정미)	692,386	528,622	558,013	391,253	540,472	2.3	38.1	-6.0
8 팜유 기타	261,378	212,496	187,805	342,671	437,777	1.9	27.8	13.8
9 렌틸콩	103,223	114,192	130,232	175,900	399,219	1.7	127.0	40.2
10 냉동 쇠고기	293,955	624,439	264,990	310,611	395,599	1.7	27.4	7.7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 Map(www.trademap.org)

한국의 對UAE 농식품 수출현황

- 2022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UAE 수출액은 2억 3,252만 9,000달러(한화 약 3,046억 원)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전체 품목 중 임산물(1.7%), 축산물(0.4%) 순임
 - 농산물 수출이 전체의 97.9%를 차지하며, 임산물(1.7%), 축산물(0.4%) 순임
 - * 농산물 수출액은 2억 2,766만 4,000달러(한화 약 2,982억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5.0% 증가함
 - * 임산물 수출액은 404만 6,000달러(한화 약 53억 원)로 전년 대비 245.5% 증가하였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29.9%의 성장률을 기록함
 - * 축산물 수출액도 81만 9,000달러(한화 약 11억 원)로 전년 대비 9.9% 증가함

한국의 對UAE 수출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94,316	135,862	260,853	199,918	232,529	100.0	16.3	4.6
농산물	192,497	132,721	259,526	198,002	227,664	97.9	15.0	4.3
축산물	398	723	510	745	819	0.4	9.9	19.8
임산물	1,421	2,418	817	1,171	4,046	1.7	245.5	29.9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비스킷류, 과당 시럽 등임

-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라면(7.3%)으로 라면의 수출액은 1,722만 5,000달러(한화 약 226억 원)로 전년 대비 59.1% 증가하였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4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 외 비스킷류, 과당 시럽, 커피 조제품 기타, 소스 조제품 기타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임

한국의 對UAE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7,911	7,477	7,958	13,579	21,434	100.0	57.8	28.3
1	라면	3,460	3,882	5,079	10,827	17,225	7.3	59.1	49.4
2	비스킷류	1,797	2,225	1,792	1,916	2,264	1.0	18.2	5.9
3	과당 시럽	2,654	1,370	1,087	836	1,945	0.8	132.8	-7.5
4	커피 조제품 기타	1,786	635	817	1,406	1,664	0.7	18.4	-1.7
5	소스 조제품 기타	202	274	496	991	1,258	0.5	27	57.9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수입식품 사전등록	- 아랍에미리트 FIRS 또는 ZAD 시스템으로 수입식품 사전등록 필요 - 제출서류 : FIRS(① 수입신청서 ② 제품 라벨 사진 및 제품 사진 ③ 할랄인증서), ZAD(① 수입신청서 ② 제품 라벨, 포장, 건강 및 영양 강조표시에 대한 원산지 관할 당국의 확인증 ③ 할랄인증서)	UAE 수입업체
소비 적합성 성적서	- 식품 수입 전 두바이중앙식품시험연구소에서 소비 적합성 성적서 취득 - 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식품은 샘플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출할 수 없음	UAE 수입업체
수입신고	- 수입신고 시 아랍에미리트 관세청에 제반서류를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①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② 상업송장 ④ 원산지증명서 ⑤ 포장명세서 ⑥ 화물인도지시서 ⑦ 수입통관 허가증 등	UAE 수입업체
수입검사	- 식품 위험도에 따라 통관채널 구분 ① 녹색절차 : 저위험식품, 위생서류 검토 진행 ② 황색절차 : 중위험식품, 위생서류 검토 및 화물검사 진행 ③ 적색절차 : 고위험식품, 위생서류 검토, 화물검사 및 무작위 샘플검사 진행	UAE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 가능	UAE 수입업체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수출검역	식물검역
	① 수출식품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아랍에미리트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아랍에미리트 수입통관·검역 절차

할랄 인증 취득	● 육류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필수 및 등록증명서 발급 필요 - 아랍에미리트 국가의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하며 이는 아랍에미리트 표준측량청(ESMA) 및 표준측량청에서 지정한 지정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육류 수출 시에는 육류를 생산하는 도축장이 아랍에미리트 관할 당국인 표준측량청(ESMA)에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등록증명서가 필요함 - 도축장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아랍에미리트 육류 도축장 등록 필요 서류	
	• 도축장 시설 및 위치정보	• 도축장의 위생 상태 정보
	• 가축의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자료	• HACCP 인증서, GMP 인증서 등
	• 도축 절차에 대한 요약 정보	• 수의사 및 도축장의 인력 정보
	• 원산지국의 관할 정부 당국에 의한 육류의 위생 및 수의 관리 입증 서류	• 이슬람법에 따른 동물 도축 요구사항과 할랄 생산의 지속성을 지킨다는 준수 확인서

- 가공공장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시행장으로 해당 작업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품목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아랍에미리트 육류 품목별 검역증명서 기재 내용

신선 적색육, 가금육 및 열처리 적색육	• 수입, 수출업자 이름, 주소, 수출국가, 수입품 일련번호, 상품정보와 수량 기재 • 전염병이 발견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었다는 내용과 도축일 3개월 이내에 구제역, 리프트게국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 • 승인된 도축형식을 따랐으며, 도축 전/후에 검사를 완료하였음과 도축된 제품을 도축 직후 섭씨 2도에서 최소 24시간 동안 보관되었다는 증명 • 통조림 적색육은 섭씨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처리되었으며, 조리육은 뼈와 지방이 제거되었고 섭씨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처리되었음 또는 건조-염장육은 뼈를 제거하였으며 식용 소금에 절여 완전히 건조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 HACCP 시스템을 준수하는 기관에서 생산하였다는 문서
열처리 가금육	• 수입, 수출업자 이름, 주소, 수출국가, 수입품 일련번호, 상품정보와 수량 기재 • 전염병이 발견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었다는 내용과 도축일 3개월 이내에 조류독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명 • 승인된 도축형식을 따랐으며, 도축 전/후로 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증명 • 가금육에서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람이 섭취해도 된다는 확인서 • 도축된 제품이 섭씨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3.6초 이상 또는 섭씨 74도에서 1초 이상 처리되었다는 확인 • HACCP 시스템을 준수하는 기관에서 생산하였다는 문서

수입식품 사전등록

- 아랍에미리트 수입업체는 FIRS 또는 ZAD(연방식품포털)에 수입식품 사전 등록 필요
 - 토후국별로 운영되었던 식품 등록시스템을 통합하여 2018년 ZAD(연방식품포털)이 개설되었으며, 현재 수입식품의 사전등록은 FIRS와 ZAD를 혼용하여 사용함
 - FIRS(Food Import&Re-export System) 등록 시 온라인으로 수입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라벨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제품의 라벨 사진 첨부이 어려운 경우 제품의 사진으로 대체 가능함
 - ZAD 등록 시 온라인으로 수입신청서와 함께 제품의 라벨, 포장, 제품의 건강 및 영양 강조표시에 대한 원산지 관할 당국의 확인증을 제출함
 - 수입식품 등록을 통해 식품 라벨 승인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 등록 미진행 시 통관이 거부됨

소비
적합성
성적서
취득

- 또한, 아랍에미리트 수입업체는 ‘소비 적합성 성적서’ 취득 필요
 - 식품 수입 전 두바이중앙식품시험소(Dubai Central Food Laboratory) 또는 국제 인정 시험소로부터 수입 대상 식품의 소비적합성 성적서 취득 권장
 - 성적서 미보유 시 화물 도착 후 샘플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출이 보류됨

수입신고

- 온라인 또는 수입업체, 현지 대리인 및 관세사를 통해 세관 신고 진행
 - 수입업체는 온라인이나 허가받은 통관 브로커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함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UAE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항공화물운송장
② 선하증권
③ 상업송장
④ 원산지증명서
⑤ 포장명세서
⑥ 화물인도지시서
⑦ 수입통관 허가증
⑧ 사업자등록증(사본)
⑨ 제품 인증서(필요 시) 등

수입검역

- 유통기한과 표시사항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관능 검사 실시
 - 수입식품 검역은 크게 ① 제품검사 ② 미생물검사 ③ 화학검사로 분류되며, 분석 기간은 보통 5~10일 정도 소요됨
 - 정밀검사가 불필요할 경우 반출확인서가 교부되어 통관이 완료되며, 육안검사 부적합 시 위험분류에 따라 단계별 정밀검사 여부를 결정함
 - 단계별 정밀검사는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녹색절차, 황색절차, 적색절차로 분류됨

아랍에미리트 단계별 정밀검사 분류

녹색절차	저위험 식품, 위생서류 검토만 진행
황색절차	중위험 식품, 위생서류 검토 및 화물검사 진행
적색절차	고위험 식품, 위생서류 검토·화물검사 및 무작위 샘플 채취 검사

- 신선식품은 포장 유형에 따라 식품의 위험도가 분류됨

아랍에미리트 식품 위험도 분류

저위험 식품	커피, 차, 설탕, 시럽, 꿀, 탄산음료 농축액, 식품첨가물, 향료추출물, 기름, 지방, 마가린, 건과일, 포장채소, 곡물, 콩, 파스타(스파게티 및 쿠스쿠스), 말린 허브, 소금, 식초, 알코올 음료, 증류주
중위험 식품	생수, 탄산음료, 주스, 농축액, 신선과일, 포장과일, 냉동야채 및 과일, 코코아, 초콜릿, 비스킷, 사탕, 향신료, 건조 스프, 이스트, 박테리아 배양물, 커피 화이트너, 휘핑크림, 잼, 젤리, 쌀, 밀가루, 전분, 튀김, 조식용 시리얼, 산성식품
고위험 식품	육류, 수산물, 우유, 요거트, 치즈, 아이스크림, 달걀, 버터, 냉동 패스트리, 우유와 계란을 함유한 베이커리 제품, 유아용 식품, 특별 규정식, 말린 견과류 및 코코넛, 견과 및 코코넛 플레이크, 참깨, 타히니, 땅콩버터, 자른 사전포장채소, 증류한 저산성 식품

- 식품 위험도 별로 검색 절차 빈도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음
- 위험도가 낮은 식품일수록 비교적 간단한 녹색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으며, 위험도가 높은 식품일수록 적색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음

아랍에미리트 식품 위험도별 검역절차 빈도 매트릭스

구분	적색 절차	황색 절차	녹색 절차
고위험식품	80~100%	0~10%	0~10%
중위험식품	15~25%	15~25%	50~70%
저위험식품	5~10%	0~5%	85~90%

- 아랍에미리트의 농약 잔류물 허용치는 유럽표준(EUR-Lex)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A,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기준을 따름
- 기후변화환경영부 법령 824:2015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수입 시 금지되어 검역이 필요한 해충 및 일정 조건 하에서 수입이 허가되어 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해충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 육류와 같이 식품위생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고위험 식품의 경우, 위생서류 검토, 화물검사 등 추가검사가 진행되는 비율이 80~100%에 달함
- 공식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산지 국가로 재수출되며, 토후국으로 처음 수입되는 식품은 자동으로 검역 대상에 포함됨

● 관세 납부 후 화물 반출 및 통관 완료

- GCC(걸프협력회의) 관세 협정에 따라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CIF 기준으로 평균 5%의 관세가 부과됨(품목에 따라 상이함)
- 담배류의 관세율은 100%, 술의 관세율은 50%이며, 예외적으로 무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도 존재함
- 관세 납부와 물품검사 완료 시 물품 반출 확인서(Exit Order, Out Gate Pass) 및 운송 차량 통과증(Vehicle Pass)을 발급받은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
-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육류 및 가공육 제품의 할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화물에 해충이나 현지 동식물 바이러스 유입이 의심되거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두 화물 반출이 금지됨

수입검역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FTA 체결현황

아랍에미리트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싱가포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1. 수출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찰쌀, 현미, 보리, 수수, 조, 콩, 팥, 백미
- 과실류 : 배, 사과, 감귤, 단감, 포도, 밤, 매실, 자두, 멜론, 수박, 복숭아, 참외
- 채소류 : 당근, 양배추, 달래, 쑥, 양상추, 우엉, 시금치, 대파, 부추, 배추, 딸기, 토마토, 수삼
- 종자류 : 무, 배추, 오이, 바질, 청경채, 겨자잎, 비타민, 양배추, 케일, 수박, 참외, 멜론, 상추, 로메인, 오크리프, 오팔바질, 루콜라, 딜,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타임, 적소렐, 맨드라미, 메리골드
- 버섯류 : 송이, 새송이, 양송이, 팽이, 표고
- 묘·묘목류 : 알로에묘, 팔레놉시스묘, 선인장묘, 딸기묘
- 기타 : 건채소류, 배합사료, 생커피원두
 - * 재식용 식물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수입 전 수입허가서 발급 필요
 - * 일부 품목(가지, 토마토 등)의 경우 부기사항(유사코드린나방 무감염 등) 필요
 - * 자세한 사항은 UAE 홈페이지에서 확인(홈페이지 주소 : moccae.gov.ae/en/services/export-import-services/release-of-agricultural-products-consignment)

● 축산물

- 신선육 :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의 적색육(Red meat), 가금육
- 가공육 : 상기 신선육을 열처리한 제품(삼계탕, 너겟, 갈비탕 등)
 - * 가공육의 경우 UAE 작업장 승인 불필요
 - * 신선육, 가공육 포함 전품목 UAE 할랄 인증 필요
- 반려동물 사료
- 제주도산 돼지고기
 - *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아랍에미리트 내 두바이 수출과 관련하여 두바이 지방정부로부터 수입허가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함

3)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GYJYQ.do?clear=1>

2. 수출 불가능 품목

- 상기 품목 외는 수출 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FamilyK(아랍에미리트)
업체 유형	한인마트
담당자명	Mr. Bilal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현재 UAE는 한국으로부터 신선식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 농산물은 현지 공급 부족을 메우고 다른 품목에 대한 고품질의 대안이 되어주기 때문에 수요가 있음
 - 가공식품 중에서는 매운맛 조절이 가능한 포장김치, 맛이 다양하고 매력적인 한국 과자, 라면과 같은 즉석식품이 선호됨. 조리가 간편하고 한국 특유의 맛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적 합리적이라는 점이 인기의 비결임
- 수입 시 애로사항
 - 한국과 UAE의 기후는 매우 다른데, 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농산물이 UAE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수입업체는 장거리 운송 시 부패 방지를 위해 정교한 저온 보관 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듦
 - 사전에 UAE 정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여러 정부 기관의 문서 제출, 검역 확인, 인증 등 다수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며 경우에 따라 비용도 증가함
- 최근 현지에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안전문제 등 이슈사항
 - 최근 몇 년 동안 UAE 수입 제품에서 여러 가지 식품 안전 문제가 나타났음. 중국산 냉동 야채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며, 허브 향신료에는 라벨링 성분 표기가 불충분했음. 또한 해외에서 수입된 육류제품에서 살모넬라균 및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 증가로 육류 수입이 제한되었음. 포장된 가공식품은 영양소 및 첨가물 관련 걸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의 조사를 받은 바 있음
 - UAE에는 무슬림 인구가 많아서, 광범위한 시장에서의 제품 출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 획득이 매우 중요함
- 한국 농식품 현지 수출 시 참고할 만한 팁
 - UAE에서 온라인 소매 사이트가 성장하고 있음. 온라인 소매 마켓 플레이스를 활용하면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제품을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어 이를 추천함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아랍에미리트는 식품첨가물 및 잔류물질에 대한 자국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A,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기준을 준수함
 - 농식품의 잔류농약, 오염물질, 미생물 기준은 기본적으로 Codex 기준을 따르며, 일부 기준은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함
 - 아랍에미리트의 식품첨가물 규정은 GCC 규정(GSO)을 준수하며, GCC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odex, EU 또는 미국의 식품첨가물 규정을 따름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CODEX 식품 규격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codexStandardList.do?data_type=STAN&menu_grep=MENU_NEW04&menu_no=2926
UAE 식품 규정안	아부다비 농식품 안전청	http://www.adafsa.gov.ae/English/PolicyAndLegislations/Guidelines/Pages/default.aspx
UAE 식품첨가물 규정	아부다비 농식품 안전청 - 허용된 식품첨가물	http://www.adafsa.gov.ae/English/PolicyAndLegislations/Guidelines/Documents/PERMITTED%20ADDITIVES%20IN%20FOOD%20cop.pdf
GCC 규정 - 잔류농약 기준 (GSO 382:2021)	GSO (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https://www.gso.org.sa/store/standards/GSO:781069/GSO%202567:2021?lang=en
GCC 규정 - 식품 첨가물 기준 (GSO 2500:2022)	GSO (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https://www.gso.org.sa/store/standards/GSO:807798/GSO%202500:2022

통보문 개정 현황(2023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⁴⁾

주요 TBT 내용

- 아랍에미리트로 식품이 수입되기 전에 라벨 평가를 신청하여, 아랍에미리트의 식품 기준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함
 - 아랍에미리트의 식품 라벨링 규정은 GCC(걸프 협력 회의) 라벨 규정인 GSO(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9:2017 “선포장식품의 라벨링” 및 기타 GSO 라벨 규정을 따름
 - 라벨 평가는 바코드, trade name, 브랜드 명칭, 영양 정보, 원산지 국가, 유통기한, 저장 요건 등이 라벨에 기입되어 있는지 검토함
- 식품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 개정사항
 - 2019년 4월부터 ‘신호등 식품 라벨링 체계’라고 불리는 영양성분 라벨링 정책이 2022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임. 이에 따라 신선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포장 전면에 빨강, 초록, 노랑 3가지 색으로 지방과 포화지방, 당류, 염분의 제품 함량 수준을 표시해야 함
 - 2021년 “신선(fresh)”, “천연(natural)”, “순수한(pure)” 등의 문구를 식품 라벨링에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한 초안을 발표함
 - 2021년 냉동 어류, 냉동 어류 필레트 제품 및 냉장·냉동 갑각류의 라벨링 기준을 수정한 개정 초안을 발표함
 - 2023년 11월 비소매 식품 포장 라벨에 사용되는 설명 및 첨부 문서 등의 데이터가 표시되는 방식에 관한 GCC 기술 규정을 발표함
- 개별 식품에 대한 GSO(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규정의 개정사항(2021~2022)
 - “체다 치즈”, “하바티 치즈”, “까망베르 치즈”, “브리 치즈”, “고다치즈”, “에담 치즈”, “모짜렐라 치즈”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 “탄산음료(비알콜성)”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4)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밤 통조림”, “밤 퓨레 통조림”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 “냉동 시금치”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함
 - “꿀”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 “양념 고기”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 개정 초안을 발표함
 - 2022년 “요거트”에 대한 식품 요구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발표함
- 걸프기술규정은 유기농 식품에 대하여 살충제 및 오염물질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첨단기술부(MOIAT)는 농산물 및 식품 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부속서에 쌀 농약 잔류한도 측정 방법론을 제정하여 명시함
 -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GSO 회원국과 공동으로 규정하는 식품 관련 표준(2022)
 - 식품첨가물에 관한 GSO 표준(GSO 2500)의 식품첨가물 허용 목록에서 이산화티타늄을 제거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표함
 - 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천연·인공 향료 및 향미 증진제 등의 안전한 사용 및 소비를 위한 GSO 지침을 발표함
 - 일반 식품에 대해 허용된 건강·영양 강조 표시,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라벨링, 광고에 사용되는 표시 사항에 관한 GSO 표준 초안을 발표함. 해당 표준에서 허용 가능·불가능한 문구를 명시하고 있어, 식품제조 및 유통자는 본 표준에 의거하여 표시 사항을 준수해야 함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라벨링 규정 - 일반 규정	아부다비 농식품 안전청	http://www.adafsa.gov.ae/English/PolicyAndLegislations/Guidelines/Documents/General%20Food%20Labelling%20Requirements%20cop.pdf
라벨링 규정 - 강조표시 규정 (UAE.S GSO CAC/ GL 1:2008)	GSO (걸프지역 표준화 기구)	https://www.gso.org.sa/store/standards/GSO:490458/GSO%20CAC-GL%201:2008?lang=en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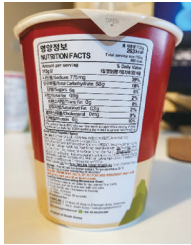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 브랜드명	•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	• 제품 바코드
	• 제품/물품명	• 보관방법	• 경고문구(필요한 경우)
	• Lot 번호	• 제조업체 주소	• 알레르기 성분 표시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 중량	• 섭취방법
	• 원산지	•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 영양성분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를 병기할 것	
		• 아랍어로 작성된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 가능	
	제품명	• 등록된 명칭으로 표기 할 것	
		•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명과 함께 식품에 대한 추가 정보 표기 필요	
	그림	• 돈육 사진 또는 돈육을 사용한 레시피의 부착 금지	
	보관방법	• 개봉 후 특별한 보관 방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방법에 대해 기재할 것	
		• 모든 육류 제품 종류는 보관 온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할 것	
	유통기한	• Best before 또는 Best before end	
		• ‘일/월/년’ 순으로 표기 할 것	
		•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월/년’ 형식으로 표기 가능	
		• 식육 소금, 흰 설탕, 베이커리 제품, 조미료 및 양념 등 정해진 식품의 경우 생산 날짜를 반드시 기입할 것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여 도장을 찍거나 엠보싱(도드라진 형태) 형태로 인쇄 할 것	
		•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것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다른 성분과 구별하여 기입할 것	
		• 돈육 또는 돈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반드시 ‘돈육’이 함유되어 있음을 표기할 것	
	원산지	• 식품첨가물의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의 그룹과 이름 및 E-번호를 표기할 것	
		• 제3국가에서 재가공 된 제품은 재가공이 실시된 국가를 필수적으로 기입할 것	
	중량	• 중량은 메트릭톤(M/T) 단위로 작성할 것	
	영양성분	• 비타민, 무기질 등 기타 추가된 영양성분의 경우 영양성분 표기 시 별도로 표기 할 것	
		• 모든 영양성분은 그 함량이 100g, 100ml 이하이거나 또는 제조사에서 정해진 제공량이 있을 때 % 단위로 표기할 것	
		• 모든 단위는 국제 기준(gram, mg, ug, IU)을 활용하며, 칼로리 정보는 킬로칼로리(kilocalories)를 기준으로 할 것	
	기타	•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을 것	
		• 라벨을 제거한 경우 기준에 작성된 라벨은 깔끔하게 제거할 것	
		• 라벨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입될 것	
		• 식품의 특성에 관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실제로 가지지 않은 효능이나 특성의 기입 금지	

* 자료 : 두바이 행정부(DM), 아부다비 농식품안전청(ADFCA)

• 떡볶이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굿 서울 떡볶이 매운맛	
원재료명	쌀가루 99%, 소금, 산도 조절제 [젖산(E270), 아세트산(E260)], 스프 : 백설탕, 포도당, 감자 전분, 감미료 [L-글루탐산 나트륨(E621)], 양념재료 [양파, 마늘, 파, 양배추, 무, 소금, 효모 추출물, 채소가루, 간장(콩, 물, 소금, 마늘 추출물), 다시마 추출물, 파 추출물, 옥수수 전분], 밀 글루텐, 덱스트린, 포도당, 양파 가루, 삼통제 [전분아세테이트(E1420)],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다시마 가루, 안정제[말토덱스트린(E1400)] 향결합제 [아산화규소(E551)], 감미료[디소듐 5'-리보뉴클레오티드(E635)], 플레이크 : 채소 해산물 플레이크(명태, 오징어, 달걀, 대두, 밀 글루텐, 당근), 건조 파	
내용량	113g	
저장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 25℃ 이하에서 보관	
제조사	ORIGIN gourmet	
제조지(원산지)	대한민국, 서울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밀, 글루텐, 대두, 생선	
영양성분 정보	1회 제공량(113g) 당	
	나트륨	775mg
	탄수화물	58g
	당류	6g
	지방	0.9g
	트랜스지방	0g
	포화지방	0.3g
	콜레스테롤	0mg
	단백질	6g

• 식물성 콜라겐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플래티넘 콜라겐 더마 샷					
원재료명	물, 가수분해 소콜라겐, 산(말산, 구연산), 비타민C(L-아스코르빈산), 딸기향, 히알루론산, 보존료(소르빈산칼륨, 벤조산나트륨), 감미료(사이클라메이트나트륨, 아세설팜K, 수크랄로스, 사카린) - 나트륨, 니아신(니코틴아미드), 비타민 E(DL-알파-토코페릴 아세테이트), 판토텐산(칼슘-D-판토텐테이트), 코엔자임 Q10, 베타카로틴, 비타민 B6(피리독신 염산염), 비오틴.					
내용량	25ml * 20병					
저장방법	직사광선을 피하여 25℃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					
제조일 및 유통기한	제조일 : 2023년 5월 유통기한 : 2026년 5월					
제조사	Sunshine Nutrition					
제조지(원산지)	독일산					
유의 사항	지정된 일일 권장 복용량을 초과하지 말 것					
영양성분 정보	일일 섭취량 25mg 당					
	가수분해 소 콜라겐		10,000mg	비타민 B6		1mg
	비타민 C		60mcg	비오틴		10mcg
	히알루론산		20mg	에너지		25kJ 148kcal
	니아신		12mg	지방		0g
	비타민 E		10mg	탄수화물		0g
	판토텐산		3mg	설탕		0g
	코엔자임 Q10		3mg	단백질		6.3g
	베타 카로틴		3mg	소금		0.11g

인증

[선택 인증]

- ESMA 할랄 인증
 - 아랍에미리트의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도입된 인증임. 해당 인증은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며, 육류 및 육류를 포함한 식품의 경우 지정된 이슬람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정서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ESMA 할랄 인증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음

인증명	ESMA 할랄 인증		
인증기관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UAE 표준측량청)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온라인 지원서, 유효한 사업자 등록/면허, 성분 목록표, 재료 목록표, 성분/ 원재료 할랄인증서 또는 제품사양서 사본, 제조공정 플로우차트 및 생산절차, 라벨 디자인, 시 성적서, FSMS/GMP/GHP or QMS 증명서, 자기증명서(자유양식)		
비용	신청업체별로 상이		
소요기간	3~6개월		
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 계약 검토 > 심사 > 부적합사항 시정 > 시정조치 확인 및 재심사 > 인증서 발급		

No.	제목	할랄인증 취득의 어려움	해당국가	UAE
			관련품목	가공식품
			유형*	TBT
1	주요 내용	• UAE 할랄인증의 명칭은 ESMA 할랄인증이며, ESMA(UAE 표준측량청) 기관이 관할함 • UAE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안전한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도입되었음. 할랄인증 취득은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며, 육류 및 육류를 포함한 식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 적용 품목 : 상하기 쉬운 동식물성 가공식품, 상하기 쉬운 식물성 가공식품, 실온보관 및 유통기한이 긴 가공식품 - 취득 방법 : 국내 승인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검사 및 인증 취득이 가능함		
	애로·건의 사항	• 자사는 일반 가공식품을 UAE로 수출하고 있음. UAE 소비자는 할랄 제품을 선호하며, 특히 육류·가금류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증명서가 필수로 필요한데,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 애로사항이 있음		
	기타	※ 타 국가 통용여부 : GCC 6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정부에서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동 지역은 대부분 통용이 가능, 말레이시아에서도 ESMA 할랄인증을 인정하고 있음		

No.	제목	AED 10,000 초과 수입 물품에 대한 등록세 부과 발표	해당국가	UAE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수입통관
	주요 내용	• 2023년 2월부터 시행된 2022년 내각 결정 제38호(Cabinet Decision No. 38 of 2022 on the Attestation Fees of Documents, Commercial Invoice and Certificates of MoFAIC)에 따라 UAE 외무부(MoFAIC)는 UAE로 수입되는 수입품(상업송장 AED 10,000 초과 기준)에 대한 외무부 인증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였고, 인증에 필요한 등록비 AED 150을 부과하는 법을 발표함 • 기존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와 별도로 발생하는 인증 비용으로, 상업송장 기준 AED 10,000을 초과하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함 • 인증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eDAS)을 통해 등록 가능하며, 서류 등록과 인증까지 12분 내로 당일 발급이 가능함.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인증 발급이 거절될 시 AED 500의 발급이 부과될 수 있음 • 외무부 인증 및 등록비 면제 항목 - 수입 상업송장 AED 10,000 미만 - 개인 운송 물품 - GCC 지역 수입품 - Freezone(자유경제무역지구) 수입품 - 군납품 및 경찰 지원 물품, 자선 물품 • 상업송장 온라인 시스템 등록으로 인한 수입업체들의 업무 가중과 미등록 시 벌금 부과 등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제도에 따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애로·건의 사항	• 최근 UAE 내 수입 물품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수입통관 시 어려움을 겪음		
	기타	▶ 온라인 시스템 eDAS https://www.mofa.gov.ae/en/services/edas-attestation		

UAE 수입통관 절차

수입 통관 절차 상세

- HS Code 취득 시 필요 서류
 - 송장(Invoice Bill)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품목분류 신청서(Request classification)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화학 물질인 경우 Data Sheet를 첨부하고 그 외 물질인 경우 Catalogs 첨부
 - * 수입 후 다른 HS code임이 판명될 경우 수입자는 품목분류 신고의 오류로 인한 추정 및 가산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정확한 코드의 분류는 제품의 특성과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필요한 서류를 UAE 연방 관세청에 제출하고 제품별 정확한 HS Code를 확인받는 것 추천
- 성분 검사 및 두바이 보건청의 승인
 - 제품의 품목분류 확인을 위해 두바이 보건청의 사전 승인을 먼저 취득
 - 처음 수출 시 Dubai Central laboratory에서 제품의 성분 검사
 - * 신청서(제품의 샘플과 유통기한 제공하고 성분명에 대하여 아랍어와 영어로 표시)
 - * 테스트를 위한 샘플들 제공(성분 리스트 제공, 제품 샘플의 생산 날짜 및 유통기한 표시)
 - * 샘플 검사 요청을 위한 DM 바코드 취득
 - * 실제 성분 검사를 위하여 충분한 양의 샘플을 제공
- 식품 표시 규정(라벨링)
 - 제품 및 브랜드 이름
 - 무게 순서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기한 함유성분표
 - 식품첨가물 표
 - 모든 동물성 지방의 원산지(Halal 원산국 중 하나)
 - 제조회사와 포장 회사의 이름 및 주소(포장 회사가 제조회사가 아닌 경우 구분하여 별도 표기)
 - 순질량

- 원산지
-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 보관 방법
 - * 식품 표시 및 부가적인 설명 문구가 외국어(non-Arabic)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랍어 표기를 병기하여 제공해야 함. 두바이 시청 소속 식품안전부서에 따르면, 2017년 수입식품의 관련 규정 위반 사례의 8건 중 7건 위반 사유는 식품 표시 관련, 특히 아랍어 표시의 불충분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UAE로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랍어 식품 표시임
 - * 가공식품 내지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인삼 관련 제품은 명시적으로 의료용이 아니라고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도록 원료로 사용되는 인삼 품종의 학명 또는 상용되는 이름을 식품 표시에 포함시켜야 함

● 통관 절차

- 세관 신고 및 서류 제출 : 수입업체가 통관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보하여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관 신고서를 작성. 수입업체는 HS 코드와 관련하여 수입제품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함
- 세관 직원의 서류 검사 : 세관원은 EDI에 제출된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평가하는데 세관 신고가 승인되면, 시스템에서 수입업체에 검사 절차 및 관련 당국의 정보를 제공함
- 인증서 및 물품 제출 :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에 대한 모든 건강 증명서 및 서류를 식품 관리 당국의 식품 검사관에게 제출함
- 식품 검사관의 서류 심사 : 식품 검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여 설정된 아래 위생 검사 채널에 따라 수입 제품을 해당 검사 채널에 할당
 - * 위험도에 따른 식품 위생 검사 채널
 - ** 녹색절차 : 위생서류 검토
 - ** 황색절차 : 위생서류 검토 및 제품 검사
 - ** 적색절차 : 위생서류 검토, 화물 검사 및 실험실 분석
- 반출 : 서류검토 및 화물 검사를 통과하면 항구에서 식품이 반출되며, 수입업체는 당국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 통관비용 및 소요기간

- 일반적으로 통관은 최소 약 4~5일 정도 소요되나,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수령하는 데만 대략 10일 전후가 소요됨. 수입품목이 수입제한 품목 혹은 면세품 여부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
-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녹색절차에 해당되어 별도의 제품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빠르면 약 3일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1. 인삼스넥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인삼 제품의 GCC 표준 해당 여부 판단

인삼 제품 해당 여부 검토

- CODEX에 따른 인삼의 취급
 - 2015년 제38차 CODEX 총회에서 채택된 인삼 제품에 대한 세계 규격에 따르면 인삼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됨. 다만 그 적용 범위는 식품이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삼 제품에 한하고 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여전히 제외됨. CODEX의 인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삼 제품(Ginseng Products)이란 그 형태에 불문하고 인삼 뿌리 이외에 다른 첨가물이 함유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아무리 인삼 함유 성분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 인삼 제품으로 볼 수 없고, 인삼이 원료로 사용된 가공식품으로 분류함
- UAE에서의 인삼 제품의 분류
 - 아랍에미리트가 포함된 GCC 국가에서 표준으로 등록한 GCC 인삼 제품에 대한 기술적 규격 (Gulf Technical Regulation, Ginseng Products)에 따른 인삼 제품에 대한 기준은 상기한 CODEX 인삼 제품 규격을 따르고 있음
 -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삼 제품은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됨
 - 인삼 관련 제품에 대한 식품과 의약품 경계가 모호하나, 통상 제품의 형태에 따라 뿌리삼, 차류, 음료 등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인삼 캡슐, 인삼 타블렛 형태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함
 - 위 기준에서는 인삼 제품을 마른 인삼, 인삼 추출물(액체), 인삼 추출물(가루)로 형태를 나누어 각각 성분의 함량 수치로 명시하고 있으나, 인삼 성분이라고 불리는 Ginsenoside Rb1 혹은 Ginsenoside Rf(흔히 말하는 사포닌 성분)의 함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CODEX에서도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 않고, 단지 'Qualitatively detected' 라고만 명시하고 있음
 - 인삼 관련 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인지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MOHP의 Classification of a product라는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된다면 식품보다 더욱 까다로운 별도의 수입절차를 거쳐 MOHP에 등록해야 함. 한편 해당 인삼 관련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건강 보조식품에 해당되는 경우, Dubai Municipality의 Montaji를 통해 Health supplements registration Certificate(또는 Consumer Products Registration)을 획득해야 함

● 제품의 HS Code

- 제품은 1211.20.00(인삼근), 1302.19.20(인삼추출물), 2106.90.94(식물, 과당, 꿀 등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제조된 조제 식료품 및 보조 식료품)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정확한 코드는 UAE 연방 관세청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알 수 있음
 - * 송장,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신청서, 선하증권
 - *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Data Sheet를 첨부하고 그 외 물질인 경우 Catalogs를 첨부함
- 품목분류 확인을 위하여 두바이 보건청의 사전 승인을 먼저 취득해야 함
- 처음 수출 시 Dubai Central laboratory에서 제품의 성분 검사를 해야 함
 - * 신청서, 충분한 양의 테스트 샘플(성분 리스트, 샘플의 생산 날짜 및 유통기한), 샘플 검사 요청을 위한 DM 바코드 필요

● 건강보조식품으로 수출하기 위한 절차

-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으로 나뉘는데,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비타민류, 영양/식이 보충제, 토닉/드링크류, 소아용 영양 보충제 등으로 다시 분류됨
- 그 가운데 ‘인삼이 아닌 인삼 조제품’은 약초 및 전통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식물성 재료, 전통 재료, 또는 의료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동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건강보조식품 항목에 해당할 수 있음
- 인삼 관련 제품을 UAE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AE 연방 식품 포털 (<http://zad.gov.ae>)에서 사전 식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바코드 번호, 원산지, 패키지 종류, 용량 또는 사이즈, 브랜드, 공장 주소 및 이름, 제품의 브랜드명, 식품첨가물, 보관 온도, 원료 등을 명시한 온라인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국에서 서류 검토 후 등록 여부가 결정함. 이때, 식품 라벨의 사본(영어 & 아랍어), 패키지의 형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찍힌 최종 제품의 사진, 건강에 관한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두바이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의 등록 관할 기관의 Montaji를 통해 Consumer Products Registration(CPRE)를 획득해야 함
- Montaji는 건강 보조 식품의 등록 절차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며, 이를 통해 등록 절차를 개시할 경우 건강보조식품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대략 12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

2. 음료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통관 절차 및 라벨링 규정 등 수입 시 참고사항

검토 결과

- 통관 관련 주의 사항
 - 식품 관련 규정과 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통관을 위해서는 기후변화환경부(MOCCAE,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및 산하의 식품안전부서(Food Safety Department)와 수입 예정인 식품의 등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게 좋음. 기후변화환경부는 식품수입을 규제하고, 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안전하지 않거나 표준 이하의 식품이 UAE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임
 - Import Regulation For Food In the UAE와 Import Procedures for food stuff 를 참고하기 바람
- 라벨링 관련 주의 사항
 - 적법한 라벨링이 필요하며, 라벨에는 제품의 원산지, 품질, 표준, 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UAE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구되는 관련 허가과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함
 - 육류 가공류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할랄 증명이 필요하나, 음료의 경우 할랄 인증 필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차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정부 입찰 관련 서류 정보

검토 결과

- 정부 입찰 시 필수 인증서
 - Non-Emirates Contractor's Certificate(NECC)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DDED)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비에미리트 기업이 아부다비에서 정부 계약에 입찰하려면 이 인증서가 필요함
 - NECC를 발급받으려면 계약자는 회사의 무역 면허증 사본, 회사 소유주 또는 대표자의 여권 사본, 상공회의소 등록 사본 등 필수 서류와 함께 ADDED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에는 회사의 재무 상태, 기술 역량 및 유사 프로젝트 관련 이전 경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인증서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음
- 정부 입찰 시 주의사항
 - NECC를 획득했다고 해서 계약업체가 정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계약자는 여전히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자격을 충족해야 함
 - 정부 입찰의 경우 공식적인 입찰 절차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개인을 통한 거래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함. 특히, 입찰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